

#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 1단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2-257-700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5.12.09.)부터 6개월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년 11월 21일(금)	2025년 12월 31일(수)	2026년 01월 05일(월)	2026년 01월 08일(목)	2026년 01월 11일(일)~ 01월 12일(월)	2026년 01월 15일(목)



##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

##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31.(수)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10263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1.21.(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5790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1.05.(월)	2026.01.08.(목)	2026.01.11.(일)~2026.01.12.(월)	2026.01.15.(목)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울산호수공원 에일린의 둘 견본주택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48)</li> </ul>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

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울산광역시 남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5.12.09**)로부터 6개월 적용됩니다.

- 공급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동 389-4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25층 4개동 총 310세대 중 잔여 52세대
- 입주시기 : 2028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5910263	01	084.9279A	84A	26	101	201, 2001, 2501, 202, 2102
					103	201, 2001, 802, 1003, 1303, 404, 504, 1404, 1804
					104	202, 302, 203, 303, 703, 1203, 1603, 404, 504, 804, 1204, 1404
	04	102.9605B	102B	26	101	303, 703, 803, 903, 1003, 1203, 1303, 1403, 1503, 1803, 2103
					102	202, 302, 402, 502, 602, 702, 802, 1002, 1102, 1402, 1502, 1702, 1902, 2002, 2102
					합 계	52

## ■ 공급금액표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동호 구분	총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증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후 30일이내	2026.07.22.	2026.10.22	2027.02.22	2027.06.22	2027.09.22	2028.01.22	
84A	101동 (1~2호)	2층	5	290,372,000	343,628,000	-	634,000,000	10,000,000	5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63,400,000	190,200,000
		3층	2	293,578,000	347,422,000	-	641,000,000	10,000,000	5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64,100,000	192,300,000
	103동 (1~4호)	4층	2	296,784,000	351,216,000	-	648,000,000	10,000,000	5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194,400,000
		5층	2	299,990,000	355,010,000	-	655,000,000	10,000,000	5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65,500,000	196,500,000
	104동 (2~4호)	6~10층	4	305,028,000	360,972,000	-	666,000,000	10,000,000	5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199,800,000
		11~15층	5	310,066,000	366,934,000	-	677,000,000	10,000,000	5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203,100,000
	16층이상	6	316,936,000	375,064,000	-	692,000,000	10,000,000	5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69,200,000	207,600,000
102B	101동 (3호)	2층	1	333,338,200	394,238,000	39,423,800	767,000,000	10,000,000	6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76,700,000	230,100,000
		3층	2	336,815,000	398,350,000	39,835,000	775,000,000	10,000,000	6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77,500,000	232,500,000
	102동 (2호)	4층	1	340,726,400	402,976,000	40,297,600	784,000,000	10,000,000	6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78,400,000	235,200,000
		5층	1	344,203,200	407,088,000	40,708,800	792,000,000	10,000,000	6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79,200,000	237,600,000
	6~10층	6~10층	8	349,853,000	413,770,000	41,377,000	805,000,000	10,000,000	7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80,500,000	241,500,000
		11~15층	7	356,372,000	421,480,000	42,148,000	820,000,000	10,000,000	7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82,000,000	246,000,000
	16층이상	6	363,760,200	430,218,000	43,021,800	837,000,000	10,000,000	73,700,000	83,700,000	83,700,000	83,700,000	83,700,000	83,700,000	83,700,000	83,700,000	251,100,000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대금 관리계좌	국민은행	393301-04-118583	주택도시보증공사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상기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금과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등 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착오납입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 바람.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605호 계약자 → '1011605홍길동' / 103동 602호 계약자 → '1030602홍길동')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음.

■ 선택품목계약은 입주자의 선택 사항으로 추가 선택 품목의 금액 및 물품 등 관련 세부 사항은 사업주체에서 임의 결정한 금액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아파트 계약 시 동시에 진행 할 예정이며, 추가 옵션 계약은 추후 정해진 일정에 별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추가 옵션 계약 일정은 계약자에게 별도 통보할 예정이오니 타입별, 품목별 가격이 상이 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

-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84A	84B	84C	102B
발코니 확장 공사비		24,000,000	24,000,000	24,000,000	28,000,000
납부방법	계약금 (계약시)	2,400,000	2,400,000	2,400,000	2,800,000
	잔 금 (입주시)	21,600,000	21,600,000	21,600,000	25,200,000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	국민은행	393301-04-118608	주택도시보증공사 남부피에프금융지사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함으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계약시 아래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신용카드 결제 불가]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예시 - 101동 1605호 계약자 → '1011605홍길동' / 103동 602호 계약자 → '1030602홍길동')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는 확장 시 총 공사금액으로 추후 사업 진행 일정에 따라 계약금, 잔금 순으로 분할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공급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b>울산광역시</b>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li> <li>■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li> <li>■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li> </ul>
청약신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li> <li>-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li> <li>-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li> <li>-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li> </ul> </li> </ul>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li> <li>■ 주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b>500%</b>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li> </ul>

##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b>2026.01.08.(목) ~ 2026.01.17(토)</b> (10일간)</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b>2026.01.08.(목) 08:00</b>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li> <li>※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li> <li>※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li> </ul>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li> <li>※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li> <li>※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li> <li>→ 제출처는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 공급계약'을 필수 입력 후 발급 분에 대해 인정</li> </ul>
	○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li> <li>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li> </ul>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li> </ul>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li> <li>※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li> </ul>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공급신청자와의 관계)</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li> <li>※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li> <li>※ 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li> </ul>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li> <li>※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 발급'으로 발급</li> </ul>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li> <li>-국내기업·기관소속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li> <li>-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li> <li>-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li> <li>*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li> </ul>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대원 및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우무확인</li> <li>※제출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li> </ul>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li> </ul>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li> <li>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li> </ul>
	<input type="radio"/>	위임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li> </ul>
	<input type="radio"/>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li> </ul>
부정경 통보를 받은자	<input type="radi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li> <li>"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li> <li>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분양 주택 확인 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li> </ul>
	<input type="radio"/>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li> </ul>

##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01.15.(목) 10:00~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input type="radio"/>	계약금 무통장입금 영수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li> </ul>
	<input type="radio"/>	당첨유형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한 경우 제외</li> </ul>
	<input type="radio"/>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사업주체가 당첨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하는 서류</li> </ul>
	<input type="radio"/>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li> </ul>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p>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p> <p>※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p> <p>※ 인터넷발급용 인감증명서의 제출의 경우, 발급용도는 '계약 및 사업신청' → 제출처는 '울산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 공급계약'을 필수 입력 후 발급 분에 한해 인정</p>
	<input type="radio"/>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본 제출 (원본은 수분양자가 보관하는 공급계약서와 같이 보관)</li> <li>수입인지 세액 : 1억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 초과 35만원 (사업주체와 균등 부담)</li> </ul>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ul>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li> </ul>

추가사항	<input type="radio"/>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input type="radio"/>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모바일 신분증 불가 (실물 지참 필수)
	<input type="radio"/>	인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도장

## ■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납부 안내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부동산 분양 계약시 공급계약서, 발코니확장계약서, 추가옵션계약서를 작성 후 각각 인지세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_방문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구매금액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 5천원	7만 5천원	17만 5천원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종 매수자까지)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나,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일정 : 무순위 당첨자 계약체결 이후 잔여세대 발생시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border="1"> <thead> <tr> <th>조항</th> <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 <th>주거전용면적</th>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제53조제9호가목</td> <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 <td>60㎡ 이하</td> <td>1억 6천만원</td> <td>1억원</td> </tr> <tr> <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 <td>단독주택</td> <td rowspan="3">85㎡ 이하</td> <td rowspan="3">5억원</td> <td rowspan="3">3억원</td> </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 </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 </tr> </tbody> </table>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p>사람은 제외)</p> <p>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p> <p>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p> <p>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p>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 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p> <p>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p> <p>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p>
--	--

#### ■ 참고사항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함을 분명히 인지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당첨 및 계약 임의 해지 시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공급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 전 취소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은 선정된 당첨자(예비입주자) 명의로만 가능하고 공동명의는 불가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 단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호	아이에스동서(주)	아이에스동서(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31 (논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231 (논현동)
법인등록번호	110111-0208383	110111-0208383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ulsanhosugwon-eilrin.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48 (현대백화점 사거리)

■ 분양 문의 : 052-257-7005